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65
○ 발 의 자 : 김호평 의원(찬성의원 12명)
○ 발 의 일 : 2018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18년 10월 29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무상 재난재해 대응으로 정신적 외상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휴가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되,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14항 신설).

나. 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공무상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를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함(안 24조제15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18. 11. 1. ~ 11. 8)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부모휴가(안20조제14항)와 공무상 재난재해 등에 노출되어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안 제24조제15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취학전 아동 자녀에 대한 돌봄을 위한 부모휴가와 재해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 위험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양육부담 경감 및 일과 가정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만,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임신·출산·자녀양육, 직계존·비속 및 3촌 이내 친인척 사망 등 경조사에 부여하고 있는 바, 특별휴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다른 광역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제17조)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서울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불임치료휴가, 장기재직특별휴가 등이 있음.

◇ 서울특별시 특별휴가 현황

휴 가 종 류				휴가일수	규정여부		비고
					복무규정	서울시 조례 (대상추가)	
특별휴가	경조사 휴 가	결혼	본인	5일	o	o	
			자녀	1일	o	o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o	
		출산	배우자	5일	o	o	
		입양	본인	20일	o	o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o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o	'17.5.18 조례개정 (2일 ⇒ 3일 확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	o	'17.12.20 조례개정 (3일 ⇒ 5일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o	o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일	–	o	
	여성보건휴가			매월 1일	–	o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1일 1시간~2시간	–	o	'17.5.18 조례개정 (육아시간 여성공무원⇒ 공무원으로 대상확대)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o	o	
	불임치료휴가			1일	o	o	
	수업휴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	–	o	
	재해구호휴가			5일 이내	–	o	
	장기재직특별휴가			재직기간 10~19년 10일, 20~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	o	
	자녀입영휴가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입영당일 1일	–	o	'17.5.18 조례개정 신설
	자녀돌봄휴가			재학중인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연 2일 이내	o	o	'17.5.18 조례개정 신설
	성과우수자휴가			5일 이내	–	o	
	출산지원휴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일	–	o	'18.3.22 조례개정 신설

나. 부모휴가 신설(안 제24조 제14항 신설)

○ 안 제24조제14항은 취학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3일”의 부모휴가(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⑬ (생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⑬ (현행과 같음) ⑭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의 소규모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가족관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서울시 특별휴가 중 부모휴가는 자녀돌봄휴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자녀돌봄휴가는 취학 후 입학, 졸업식, 학부모 상담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부모휴가는 아동 보육(병원입원, 진료, 예방주사 접종, 긴급한 유치원등 휴원 등)에 필요한 경우로 구분됨에 따라 동 조항은 자녀돌봄휴가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자녀돌봄휴가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부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마다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인원, 휴가일수 등이 상이한 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 서울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부모휴가(특별휴가)를 도입하여 규정한 자치단체는 경기(4세 미만 5일), 강원·전남(2세 미만 5일), 충북(초등생 이하 3일), 제주(3일)로 연령, 휴가일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다. 재난재해 현장대응으로 정신적 외상 위험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안 제24조 제15항)

○ 안 제24조 제15항은 화재, 지진, 정전 등 공무상 재난·재해 대응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 있는 고위험직군의 공무원에게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를 위하여 특별휴가(3일 이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⑬ (생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⑬ (현행과 같음) ⑮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특히, 재난·재해, 사고, 위험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험군의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체와 정신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스트레스 및 정신적 외상의 강도가 상당한 바, 신체적 심리적인 회복과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를 위한 특별휴가 일수를 “3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3일의 기간으로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가능할지 여부와 휴가 일수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특별휴가 부과를 위한 정신적 외상의 위험범위 정도가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의할 것인지, 의료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과 특별휴가 남용 소지 여부 및 집행에 있어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격무직원 힐링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고위험군 지정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와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

〔참고자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개정 2018. 1. 18.>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 부문	갑 종	을 종	병 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관광여객선·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개항단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한센병·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연구 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飼養)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지하철 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落磐)·갱붕괴(坑崩壞)·낙사상(落死傷)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7.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부문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연돌(煙突)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 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비고: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